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참고서류

※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및 경영참고사항 등 상세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제 13기 요약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연결)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13 기 (2018)	제 12 기 (2017)
현금및예금	23,897	40,2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8,26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8,568
기타유동자산	14,645	42,912
유형자산	1,493	1,558
무형자산	69,054	69,615
기타비유동자산	5,836	2,073
자산총계	193,193	234,954
기타채무	6,060	3,979
장기기타채무	11,416	11,721
전환사채	2,376	3,607
파생상품부채	71	506
기타부채	8,182	13,194
부채총계	28,105	33,007
자본금	34,909	34,017
주식발행초과금	331,444	319,48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163	2,502
기타자본항목	11,692	11,479
이익잉여금(결손금)	(220,120)	(165,536)
자본총계	165,088	201,947

2. 손익계산서(연결)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13 기 (2018)	제 12 기 (2017)
영업수익	7,712	6,865
영업비용	66,755	57,483
영업이익(손실)	(59,043)	(50,618)
기타수익	2	15
기타비용	(1,062)	(937)
금융수익	6,035	5,382
금융비용	(1,364)	(10,023)
법인세비용	(804)	(840)
당기순이익(손실)	(56,236)	(57,021)
기타포괄손익	4,661	(6,538)
총포괄이익(손실)	(51,575)	(63,559)

3. 재무상태표(별도)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13 기 (2018)	제 12 기 (2017)
현금및예금	7,321	25,2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2,51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9,719
기타유동자산	14,744	42,151
투자자산	80,706	75,414
유형자산	1,242	1,211
무형자산	36,211	37,109
기타비유동자산	49,877	28,304
자산총계	282,617	299,108
기타채무	6,034	8,181
장기기타채무	11,416	11,721
전환사채	2,376	3,607
파생상품부채	71	506
기타부채	1,811	2,688
부채총계	21,708	26,703
자본금	34,909	34,017
주식발행초과금	331,444	319,48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36	-
기타자본항목	11,691	11,480
이익잉여금(결손금)	(120,471)	(92,577)
자본총계	260,909	272,405

4. 손익계산서(별도)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13 기 (2018)	제 12 기 (2017)
영업수익	15,311	13,295
영업비용	47,860	42,108
영업이익(손실)	(32,549)	(28,813)
기타수익	-	14
기타비용	(894)	(937)
금융수익	6,946	6,162
금융비용	(1,398)	(10,405)
당기순이익(손실)	(27,895)	(33,979)
기타포괄손익	3,336	-
총포괄이익(손실)	(24,559)	(33,979)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등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참고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주요변경 사항

1.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제9조, 제11조, 제12조(삭제), 15조의2(신설), 제16조)

-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주식등이 전자등록 될 경우 주주등이 인감 또는 서명 등 주주관련 제반 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
 -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전자등록의 근거를 정관에 신설함.
2. 대표이사 직위 관련 규정 삭제(제18조, 제21조, 제34조, 제43조)
- 법률상 '대표이사'의 사내직위를 정관에 병기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실무상 대표이사의 직위가 변경 될 경우 정관변경 필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직위에 관한 문구를 삭제
 -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유고 시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외부감사인 선임방법 개정내용 반영(제47조의2)
-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정관 일부 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u>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u>	<u>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u> <u>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u>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전자등록이 사실상 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
<u>제11조(명의개서대리인)</u> ①~② 생략 ③ <u>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④ 생략	<u>제11조(명의개서대리인)</u> ①~②(현행과 같음) ③ <u>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u>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u>	<u>(삭제)</u>	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u>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② (생략)</u> ③ <u>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1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u>	<u>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② (현행과 같음)</u> ③ <u>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u>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p>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17조(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17조(소집시기)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p>
<p>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p>
<p>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p>	<p>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p>	<p>전자문서 통지가 가능하게 개정</p>
<p>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서울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지방에 본점을 둔 회사가 특정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그 장소를 추가 가능</p>
<p>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대표이사 유고시 주주총회 의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p>
<p>제27조의2(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p>	<p>(삭제)</p>	<p>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와 같은 규정을 두</p>

<p>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지 아니함</p>
<p>(신설)</p>	<p>제30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p> <p>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p>	<p>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5항에 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밖의 회사에서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p>
<p>제32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p>
<p>제34조(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사장)가 수명일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 한다</p>	<p>제34조(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수명일 경우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 한다</p>	<p>대표이사 유고시 직무 대행순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p>
<p>제35조의3(이사회 내 위원회)</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기타 경영 목적상 필요한 위원회</p> <p>②~③ (생략)</p>	<p>제35조의3(이사회 내 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4.기타 경영 목적상 필요한 위원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해 추가</p>
<p>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p>	<p>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감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p>	<p>대표이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위명 예시를 삭제</p>

<p>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u>대표이사(사장)</u>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u>대표이사</u>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47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u>의한 감사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u> 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제47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u>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u>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 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외감법 개정의 다른 수정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견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문은상)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문은상	'65.06.23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러시아 모스크바 제1의과대학 졸업	없음
	이사회	現)신라젠㈜, 대표이사 사장	본인
		前)신라젠㈜, 부사장	
前)주한 러시아대사관, 의사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양경미)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양경미	'65.12.1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없음
	이사회	現)신라젠㈜, 부사장	없음
		前)아기젠바이오 테크리미티드 대표이사	
		前)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前)베링거 인겔하임, Head of Clinical Research In Asia			

제3-3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국윤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국윤호	'56.01.2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	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現)신라젠㈜ 사외이사	없음
		現)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 교수	
前)NY Mount Sinai Hospital- 연구원			

□ 제3-4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형규)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형규	'49.09.18	고려대학교 의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의학과 의학박사	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現)신라젠(주) 사외이사	없음
		前)대한의사협회-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	
	前)고려대학교 의료원 - 안암병원장		

□ 제3-5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병주)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김병주	'68.06.24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Law School	없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現)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없음
		前)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상무	
	前)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감사 선임의 건 (박종영)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회사와의 거래관계
	추천인	주요 경력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종영	'61.01.30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없음
	이사회	現)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 감사(비상근)	없음
		前)하나UBS자산운용 부사장	
		前)KEB하나은행 부행장	
	前)외환은행 기업본부장(전무)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보수한도	집행액	보수한도
금액	2,000	1,251	2,000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보수한도	집행액	보수한도
금액	300	60	300

제 7 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회사 주요 인력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함으로써 높은 경영 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9 년 3 월 4 일 이사회에서 총 30 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총 290,000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본 안건은 2019 년 3 월 4 일 이사회에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제 13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19 년 3 월 4 일에 기 공시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참고 바랍니다.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000 외 29 명	당사 및 관계회사 임직원	-	보통주	290,000
총(30)명	-	-	-	총(290,000)주

※상기 부여대상자는 등기임원이 아닌 임직원에 해당하며, 각 개인별 부여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의 1 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여 부여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290,000 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73,500 원 상법 제 340 조의 2 제 4 항의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 2. 행사기간 : 2021.03.05~2028.03.04	-
기타 조건의 개요	기타 세부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규, 당사 정관,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70,363,125	발행주식 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종류주	10,554,468	1,556,223

- 최근 2 사업연도와 해당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16 년	2016.03.23	62 명	보통주	2,890,000	1,436,777	847,000	606,223
2017 년	2017.03.03	1 명	보통주	200,000	-	-	200,000
2018 년	2018.02.23	43 명	보통주	500,000	-	140,000	360,000
2018 년	2018.03.23	2 명	보통주	50,000	-	-	50,000
2019 년	2019.03.04	30 명	보통주	290,000	-	-	290,000
계		총 138 명		총 3,930,000 주	총 1,436,777 주	총 987,000 주	총 1,506,223 주